

#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작성 방법

< '22. 5. 25.(화) / 학생과(장학팀) >

## □ 반환서약서 작성대상

-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해당 학기중 자퇴 및 휴학환불 신청 학생
  - ※ 반환사유발생일: 자퇴 및 휴학(환불) 신청일
- 국가장학금 수혜 후 휴학중(장학이연) 자퇴 신청 학생
  - ※ 반환사유발생일: 휴학 신청일(휴학중 자퇴), 자퇴 신청일(복학후 자퇴)

## □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횟수

- 이전 학교에서의 수혜실적\*을 포함하여, 개인별 최대 지원 횟수 (총 8회\*\*) 이내에서 지원
  - \* 학생 개인별 총 수혜실적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동되어도 이전 학교의 수혜 실적까지 누적 관리(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·편입, 재입학 모두 포함)
  - \*\* 5년제 재학 학생은 10회, 6년제 재학 학생은 12회

## □ 반환방식 선택 및 동의 (택1)

- 수혜횟수 누적
  -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장학금 반환금 발생시, 미반환분(학생수혜분)을 학생이 반환하지 않으며 수혜횟수 1회 누적
  - ※ 취업 등 사유로 자퇴하여 향후 복학·대학진학 계획이 없는 학생 권장
- 장학금 전액반환
  -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장학금 반환금 발생시, 미반환분(학생수혜분)을 학생이 전액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
  - ※ 타대학 입학예정이거나 향후 복학·대학진학 계획이 있는 학생은 전액반환 권장(대학 진학·복학 후 장학금 정상수혜하는 것이 유리)
- 장학금 미반환
  - 장학금 반환금이 발행하지 않는 시점\*에 자퇴 및 휴학환불 신청하여 해당학기 장학금을 정상수혜하여 수혜횟수 1회 누적
  - \* (1학기) 5월 30일 이후 자퇴, (2학기) 11월 30일 이후 자퇴(2022학년도 기준)

